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

# 2026-제5호 입법정책 동향

---

2026. 5.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

**발행부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80-4415)

**편집·검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지원팀(☎ 280-4414)

**인 쇄:** 2026년 5월 일

**발 행:** 2026년 5월 일

---

# 목 차

## I. 타 시도 입법 동향

- ◇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5
- ◇ [일부개정]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8
- ◇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 ..... 13

## II.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 ①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26.4.21. 시행) ..... 19
- ② [제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26.4.9. 시행) ..... 24

## III. 입법·정책 현안

- ◇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격차 해소와 인구 이동 전략 ... 33

## IV. 해외 법제 동향

- ①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 ..... 36
- ②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 ..... 39

##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 제시 및 법령 해석 사례

- ① 관계법령에 따른 사무를 위임한 경우, 협조 요청 권한도 위임 범위에 포함 여부 ... 44
-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 여부 ... 47

## VI. [생활법령정보] 이야기로 풀어보는 재판

- ◇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녹음은 위법한 것일까? ..... 51

# I . 타 시도 입법 동향

# I. 타 시도 입법 동향

◇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4. 8.] [부산광역시조례 제7928호, 2026. 4. 8., 일부개정]

## □ 관련 상임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 개정이유

- 긴급차량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차량 출동에 관한 교육·훈련과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화재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 긴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

## □ 주요내용

-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제6조제2호 신설)
- 긴급차량 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시민 홍보 실시 (제9조 신설)

## □ 입법 시사점

- ▲ 부산광역시는 화재 및 구급 안전에 취약한 지역으로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을 위해 동조례를 2024. 7. 3.부터 제정·시행하였음
- ▲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긴급차량 출동 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및 관계기관 간 협력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감소시켜 사회적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전북도의 경우, 유사조례(「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2024.9.27.제정)이며, 부산광역시 조례와 같이 ①재정 지원, ②소방관계종사자 교육·훈련, ③도민 홍보 실시 조항 등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긴급차량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이란 산림인접지 및 고지대, 주택가 골목길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에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의 현황
2.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 개선사업)** 시장은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재산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
2.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3. 소방용수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지원
4.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
2. 화재·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 화재진압훈련 실시
3. 관내 지리조사 등을 통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
4.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5.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구·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점검)**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8.]

부칙 <조례 제7348호, 202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28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7. 1.] [경상남도조례 제6067호, 2026. 4. 30., 일부개정]

□ **관련 상임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개정이유**

- 최근 자영업 구조가 1인 중심의 단독·소규모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단독 및 야간 영업 환경에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반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사항을 포함 (제6조제2항제10호 신설)
-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제8조제11호 신설)
  -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제15조 신설)
  - 범죄예방은 전문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명시

## □ 입법 시사점

- ▲ 최근 자영업 구조가 1인 중심의 단독·소규모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 확보 필요성 증가, 정부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6.7. 시행)을 통해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함
  - ▲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주로 영업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절도, 폭력,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의 사업장의 안전 문제는 단순한 개별 영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사후 대응 →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사료됨
- 전북도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중에 있으나,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범죄예방 제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참고) <경찰청 범죄 발생 장소 통계 > (2024.12.31.)

(단위: 건)

분류	주거지 (원룸·오피스텔 등)	도로	백화점, 대형마트	소매·편의점, 시장 (노점)	창고·무인 기타상점	숙박·목욕 ·미용	음식점· 카페	주점·유흥
강력범죄	6,190	1,735	113	499	554	2,719	1,385	2,541
절도범죄	28,800	22,009	12,437	18,046	26,727	3,079	6,665	2,433
폭력범죄	64,060	45,601	676	3,700	5,178	4,098	9,493	13,535
지능범죄	58,484	20,634	1,837	5,201	13,393	2,840	14,253	9,050
합 계	157,534	89,979	15,063	27,446	45,852	12,730	31,796	27,559

#### ※ 범죄분류별 세부사항

- 강력범죄: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 / 강제추행 등, 방화
- 절도범죄: 절도
- 폭력범죄: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악취/유인, 폭력행위 등, 공갈, 손괴
- 지능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4. <삭제 2020.12.31.>
5.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법정단체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 등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도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4.30.>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9.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 10.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4.30.>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창업상담·컨설팅·교육·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3.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등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4.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지원
5. 자금·인력·기술·판로·마케팅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6. 공동판로 확보,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
7.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폐업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8.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9. 경상남도 내 지역방송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 지원
10.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
- 11.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12.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포럼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제8조에 따른 사업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의2(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3(중복지원의 제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구매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이하 “소상공인생산제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생산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을 매년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2020. 12. 31.>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2025. 7. 3.>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경찰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0.]

부칙 <2026.4.30.>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6. 4. 2.]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 제10017호, 2026. 4. 2., 제정]

□ 관련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회 관계 입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연
- 서울특별시는 2022년부터 기후예산서를 매년 작성·제출하여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하고 있고, 교육청도 녹색성장을 위한 시대흐름에 발맞춰 본 조례를 제정함
- '기후예산서'와 '기후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
-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당면한 과제로써 기후예산제를 도입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제공을 목표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제1조~제2조)
  - (정의) “기후예산제”, “기후예산서”, “기후결산서” 용어의 뜻
-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제5조)
  - (작성·제출) 매 회계연도마다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를 의회에 제출
  - (환류)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작성시 반영
-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제8조)
  -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한 15명 이내 자문기관으로 구성
- 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제9조~제14조)

## □ 입법 시사점

- ▲ 기후예산 제도를 시행 중인 교육청은 충남교육청<sup>(2025.12.30. 제정)</sup>, 서울시 교육청<sup>(2026.4.2. 제정)</sup> 2곳임
- ▲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 결산단계까지 '기후예산제' 시행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활성화조례는 시행 중이지만, 별도의 '기후예산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추후, 국회 입법 과정과 본 조례를 참조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예산제 도입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후예산서"란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 성과지표, 기대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기후결산서"란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 및 기금 결산 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지표 설정, 대상 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을 통해 학교 등 교육환경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과 연계하여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후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방법을 포함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예산제의 개요
2. 기후예산의 규모
3. 기후예산의 성과지표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후예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예산의 집행 실적
2. 기후예산의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3.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달성률 평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후결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년도 기후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2. 제4조에 따른 기후예산제 지침서에 관한 의견
3. 기후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
5. 기후예산제의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총괄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기후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온실가스 감축 관련 활동 중인 관련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참여 및 지원)** 교육감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기후예산제를 연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침서, 추진사업 및 운영 성과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후예산제 우수사례를 홍보하거나 각종 행사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0017호,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2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 Ⅱ.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 ①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9호, 2026. 4. 21., 일부개정]

#### □ 개정이유

-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투자 활성화 제고
-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 국내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 국내 자본시장 투자 및 익금 상향 유도
  - \* (익금불산입률) 기업(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 특정 수익에 대해, 법인세 계산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익금)에서 제외해주는 비율. 배당금 전체를 회사의 이익으로 보지 않고, 정해진 비율(30%, 50%, 80%, 100% 등)만큼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뜻함.

#### □ 주요내용

- ① (익금불산입률 상향)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적용을 한시적으로 상향 (제23조 신설)
- ② (양도소득금 공제)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한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 함 (제91조의26 신설)
- ③ (소득공제 신설)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 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신설 (제91조의27 신설)

#### ※ (참고) 개정안 부대의견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해외투자자의 조속한 국내투자 복귀 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국내시장 복귀계좌 상품 및 환율변동위험 회피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조치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lt;신 설&gt;</p>	<p><b>제23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b> ①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② 「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조세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li> <li>2. 차입금의 이자 중 외국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li> </ol>

현 행

개 정

<신 설>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27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을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국내시장복귀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그 납입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국내시장복귀계좌의 잔액이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나.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80

다.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lt;신 설&gt;</p>	<p>2.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국외상장주식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이라 한다)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p> <p>③ “국내시장복귀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납입한도가 5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li> <li>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나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li> <li>나.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li> <li>다. 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li> </ul> </li> </ol> <p>④ 제1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⑤ 거주자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⑥ 국외상장주식의 보유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관리방법, 납입한도의 기준, 국외상장주식의 양도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b>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b> ①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 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li> <li>2.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li> </ol> <p>②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③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의 판단기준, 공제 적용 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② [제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9.] [법률 제20920호, 2025. 4. 8., 제정]

### □ 제정이유

-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치유관광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 주요내용

- ① (치유관광의 정의)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치유관광'으로 정의 (제2조)
- ② (계획 수립·시행)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제5조 및 제6조)
- ③ (협력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 ④ (시설 등록 및 인증)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및 등록취소, 지위 승계 및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 규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⑤ (지구 지정 등)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규정 (제19조 및 제20조)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li> <li>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길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li> <li>3.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에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li> <li>4.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li> <li>5. “치유관광서비스”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li> <li>6. “치유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li> <li>7. “치유관광사업자”란 치유관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li> <li>8. “치유관광산업지구”란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및 치유관광서비스를 상호 연계하거나 융복합을 촉진함으로써 특화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li> </ol>

현 행	개 정
<p>&lt;신 설&gt;</p>	<p><b>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b></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유관광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li> <li>2. 치유관광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li> <li>3. 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li> <li>4.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li> <li>5. 치유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li> <li>6.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7. 치유관광산업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li> <li>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산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li> <li>9.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b>제6조(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b></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b>제7조(협력체계의 구축)</b>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b>제8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b> ①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b>제9조(등록 취소 등)</b>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② 등록기관의 장은 치유관광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b>제10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b> ① 치유관광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치유관광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치유관광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li> <li>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li> <li>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li> <li>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li> </ol> <p>③ 치유관광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 또는 보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치유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치유관광사업자가 양수·상속 또는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p>&lt;신 설&gt;</p>	<p><b>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b>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li>2.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ol>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p> <p>④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p> <p>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그 밖에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절차·방법·유효기간·갱신 및 승계, 인증에 관한 평가, 인증표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p>&lt;신 설&gt;</p>	<p><b>제19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b>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유관광산업지구의 개념·목표·위치 및 범위</li> <li>2.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프로그램 현황</li> <li>3.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치유관광사업자 간 연계 및 지역 관광산업과 협력 방안</li> <li>4.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계획</li> <li>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li> </ol>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li> <li>2.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li> <li>3.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li> <li>4.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치유관광산업 간의 적합성</li> <li>5.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p>&lt;신 설&gt;</p>	<p><b>제20조(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b>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치유관광산업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치유관광산업지구 내에 관련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li> <li>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li> </ol>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 입법 시사점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웰니스 트렌드에 발맞춰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 가치 산업 활성화 제도 마련에 의의**

✓ (주요 분야)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농업**, **의료·뷰티**

✓ (지역 사례) **충북**(청남대 →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인천**(강화도 → 자연, 영종도 → 휴양, 도심 → 의료·뷰티)

▲ 도의 경우에도 법률 제정에 맞춰 웰니스 관련 조례 등 개정 소요 검토 필요

※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中

### **Ⅲ. 입법 · 정책 현안**

## IV. 입법 · 정책 현안

### ◇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격차 해소와 인구 이동 전략

※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6.3.30.] / 하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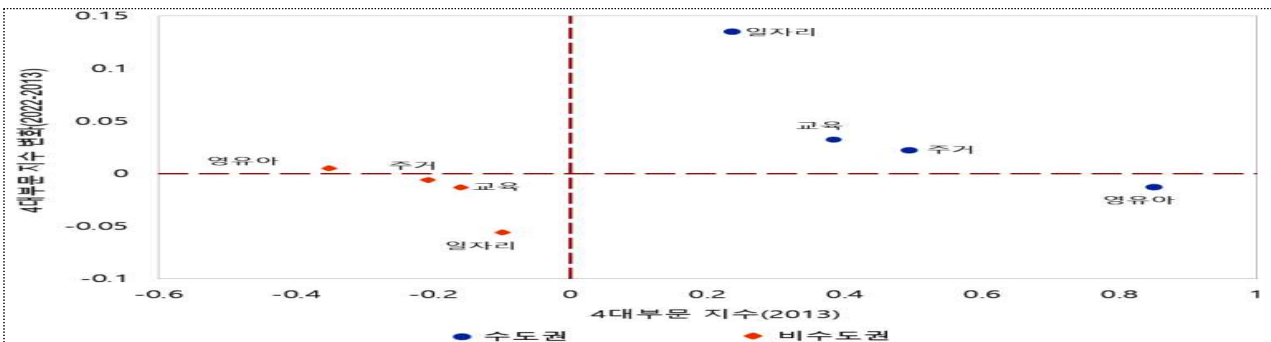
- ▲ 「지역불균형 완화 연구 TF」를 통한 지역간 격차가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 4대 부문(일자리, 교육, 주거생활 인프라, 영유아 보육)을 분석 지표로 활용
- ▲ 4대 부문별 지수 증감 분석 결과 수도권은 지수가 상승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지수 변화 거의 없음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환경과 변수 등을 파악해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

#### 1 [4대 부문] 분석결과

- 2013~2022년 전국 227개 시·군·구 대상 4대 부문 분석 결과, 수도권의 경우 4대부문(일자리, 교육, 주거, 영유아) 지수 모두 비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수도권 한정 2013년 대비 영유아 지수를 제외하고 2022년 일자리, 교육, 주거 지수 상승함
- 비수도권의 경우, 10년간(2013~2022년) 4대 부문 지수 변화 없음

[표1]

수도권과 비수도권 4대 부문 지수 변화(2013년 대비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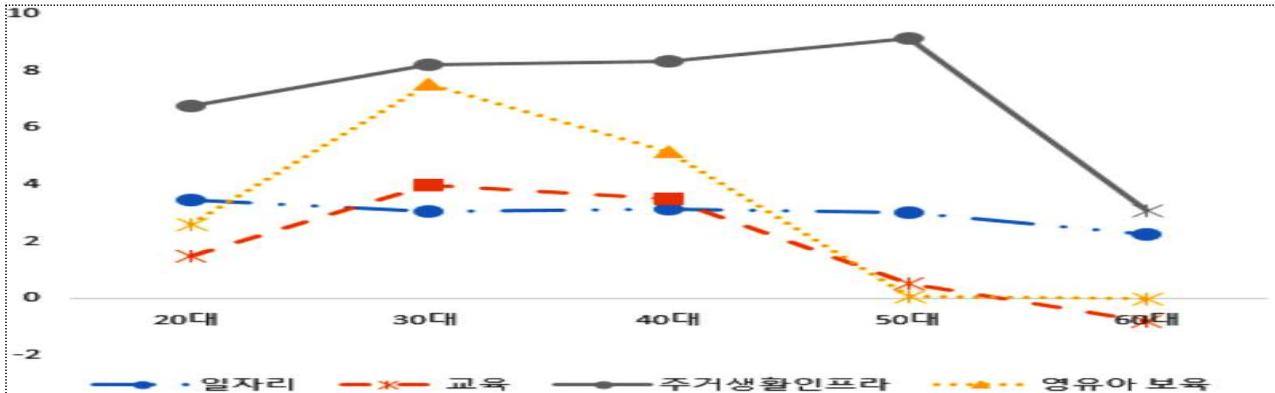
※ 자료: 김현석·한성민, 「지역불평등 양상과 지역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24. p41.

- 총 인구 관점에서, 전 연령대에서 '주거생활 인프라'와 '일자리 부문'이 인구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30대) 영유아 부문 개선 시 인구유입 긍정 영향, (50대) 주거생활 인프라 중요

표2

부문별 지수가 연령대별 총인구에 미치는 영향



※ 자료: 김현석·한성민, 「지역불평등 양상과 지역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24. p57.

## 2 세부 분석결과

-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석기간 (2013~2022년) 동안 수도권은 4대부문 지수 모두가 상승하였으나, 비수도권은 고착화된 상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정도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별 영향) 인구유입 관점에서 주거생활 인프라 및 일자리 환경이 개선되면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표1]처럼 수도권은 높은 효과가 나타나고 비수도권은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환경 개선의 질적 차이가 있고, 비수도권으로 이동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3 향후과제

- 지역격차를 야기하는 원인변수 분석 후, 지역균형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
- 또한,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별 실상을 반영한 다각적, 질적 분석이 동반되어야 함

## **IV. 해외 법제 동향**

## IV. 해외 법제 동향

### 1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

[국회도서관 -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3.31.]

#### □ 주요내용 (요약)

- 최근 미국 내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결정 관행의 확산으로 경쟁사 간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함
- 특히, 주거용 임대시장에 알고리즘 가격결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통적 시장 가격 합의 방식과 다른 형태의 가격담합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일부 지역(뉴욕주, 코네티컷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과 임대조건 조정 알고리즘 등을 독점규제법상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여 규제 시행 중임**
- 우리나라에서도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경우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주거용 임대시장에 먼저 도입하고, 이후 다른 산업 섹터에도 규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전(全) 산업을 대상으로 가격, 거래조건 결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설정·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할 수가 있음

※ (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 알고리즘 시스템 쟁점 사항

- **(알고리즘 시스템 도입 · 확산)**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기업이 알고리즘 가격결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른 수요예측, 경쟁사간 가격 비교, 소비자 특성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뒤 가격을 산정함 이는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요 예측에 정확도를 높이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함
- **(쟁점 및 논의사항)**

유형별	주요내용
<b>독점규제법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간 각각의 내부정보를 알고리즘에 제공하여 가격을 추천 받음</li> <li>• 이는 여러 경쟁사 간 알고리즘에 따라 추천된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어 외형상으로는 개별 기업별 단독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처럼 보임</li> <li>• 허나, 실제로는 ‘공동으로’ ‘동일한 시스템’과 ‘동일한 매커니즘’에 의존하여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 상황을 야기시켜 전통적인 ‘가격담합’의 형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함</li> </ul>
<b>입법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러한 알고리즘과 플랫폼을 이용한 담합방식은 전통적 담합 형태와는 달리 공개가 어렵고, <b>위법행위의 적발 · 입증도 어려움</b></li> <li>• 기존의 현행법으로 새로운 유형의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규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 유형의 위반형태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가 <b>입법과제로 부상</b></li> </ul>
<b>연방과 주 논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방 차원)</b> 「셔먼법(Sherman Act)」 제1조를 근거로 알고리즘 가격 담합을 규율함</li> <li>• <b>(주 차원)</b> 뉴욕주, 코네티컷주, 캘리포니아주는 각 주의 독점규제법을 개정하여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규제하는 별도 규정을 도입함</li> </ul>

○ (알고리즘 가격담합 금지 관련 미국 주(州)법 현황)

구 분	뉴욕주법	코네티컷주법	캘리포니아주법
시행일	2025.12.15.	2026.1.1.	2026.1.1.
적용범위	주거용 임대시장의 가격·임대조건		전 산업의 가격·거래조건
핵심대상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알고리즘 장치	수익관리장치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
의무주체	알고리즘 장치 제공자·운영자 및 임대주택 소유자·관리자	수익관리장치 제공자·운영자·사용자	알고리즘 사용자·배포자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알고리즘 장치를 사용해 둘 이상의 소유자·관리자 사이의 경쟁 회피 합의를 조장하는 행위 ②소유자·관리자가 알고리즘 장치의 추천에 따라 임대료·갱신조건·입주율 등 임대조건을 설정·조정하는 행위	누구든지 비공개 경쟁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익관리장치를 사용해 임대주택의 임대료·입주율을 설정하는 행위	①누구든지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을 경쟁·제한적 합의를 일부로서 사용·배포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가격·거래조건 채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강요하여 알고리즘을 사용·배포하는 행위
데이터범위	둘 이상의 소유자·관리자의 임대료, 공급 수준, 계약 종료일·갱신일 등 (공개·비공개 불문)	비공개 경쟁사 데이터(실제 임대료, 입주율, 임대차 시작일·종료일 등), 공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제외	경쟁사 데이터 (공개·비공개 불문)

○ (연방과 주 규제방식 비교)

⇒ 연방 차원의 규제는 「서먼법」 제1조를 전제로 사후 규율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뉴욕주·코네티컷주·캘리포니아주 법은 제공자, 이용자 모두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우리나라 입법 시 고려사항

- (주요법 개정) 향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알고리즘 가격 담합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미국의 주(州)법 참조 가능

## ②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 4. 14.]

### □ 주요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금 조달이 중요한 문제이나, 부동산과 개인신용을 제외한 동산(기계설비), 채권(매출채권)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
- 일본은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과 명확한 법리 해석을 위해 2025년 6월에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및 「양도담보계약과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 예정임

✓ (양도담보계약)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되, 후에 채무를 이행하면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방식

✓ (소유권유보계약) 구매자가 물건을 미리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판매자가 계속 보유하는 방식

-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이라는 새로운 담보권을 규정하고 기존의 양도담보와 병존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나, 동산·채권 담보권과 양도담보 간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 지위 여부 또는 법리 해석에 한계가 있음

✓ (동산·채권담보권) 기업이나 사업자가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하며 등기를 통해 공시(소유권자는 채무자)

✓ (양도담보) 판례를 통해 인정하는 방식으로 통상 개인간 거래나 소액자산 등을 담보할 때 활용하며 인도, 점유개정 등으로 공시(소유권자는 채권자)

- 이에 일본의 양도담보법 등을 참조한 담보법제 개선으로 통합된 양도담보법제 설계와 비교법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률) 「민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 도입 경과

- **(법제 정비)** 일본은 오랫동안 양도담보계약과 소유권유보계약을 활용하여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 조달이 가능했으나,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담보관련 법제 필요성 제기
- **(담보법제 마련)** 2025년 1월 '담보법제 개정에 관한 요강' 공개 후, 2025년 6월 6일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양도담보법”)과 「양도담보계약과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법」을 제정

## □ 일본 양도담보법 주요 내용

-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의 거래구조)**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 담보를 목적으로 동산이나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이고, 소유권유보는 매도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상품 소유권을 본인에게 유보함으로써 대금채권을 실현

### [참고1] <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의 거래 구조 >

종류	담보 발생	거래 구조
양도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설정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채권자(담보권자)에게 재산을 양도함</li> <li>• 채무자는 동산질권과 달리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음</li> </ul>
집합동산 양도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동산의 범위는 참고 내 재고자산처럼 종류, 소재장소 및 양적 범위 지정으로 특정됨</li> <li>• 특정채권의 범위는 채권의 발생시기 및 원인 등의 지정으로 특정됨</li> </ul>
집합채권 양도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동산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새로 편입된 동산에 양도담보권이 미침</li> <li>• 집합동산·집합채권 설정자는 집합동산과 집합채권 전체 가치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함</li> </ul>
소유권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품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합의한 경우에 체결됨</li> <li>• 동산양도담보처럼 매도인을 담보권자, 매수인을 설정자 구조로 취급함</li> </ul>

출처) 일본 법무성 참고<sup>1)</sup>

- **(담보물의 범위)** 적용대상은 동산, 채권 및 기타 재산이며, 저당권 목적재산과 지식재산권은 제외
  - 동산은 기계, 재고, 설비 등 '부동산이 아닌 양도 가능한 모든 물건'이고 채권은 「민법」상 지명채권 외에도 전자채권, 사채·주식 등을 포함
- **(담보권 간 우열관계)** 동일한 동산에 복수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순에 따라 결정

[참고2] <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의 거래 구조 >

담보권	경합 담보권	우선순위 판단기준
동산양도담보권(등기)	동산양도담보권(등기)	등기 전후
동산양도담보권(점유개정)	동산양도담보권(점유개정)	점유개정 전후
동산양도담보권(등기)	동산양도담보권(점유개정)	등기 우선(점유개정 후순위)
동산질권	동산양도담보권(등기)	인도 또는 등기 전후
동산질권	양도담보권(점유개정)	인도 우선(점유개정 후순위)

출처) 大澤加奈子 참고<sup>7)</sup>

- 인도 방식에는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등이 있으며, 다만 점유개정은 외형적으로 점유 상태가 변하지 않는 관념적인 인도라는 점에서 대항요건으로서의 실효성에 문제 제기가 되어 양도담보법에서 점유개정은 다른 담보권보다 후순위로 규정함
- **(담보권 실행방법)** 양도담보법 상 담보권 실행방법에는 사적 실행(귀속청산방식, 처분청산방식)과 법원 경매에 의한 실행을 규정함
- **(양도담보계약 규정 준용)** 소유권유보 또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양도담보법은 양도담보계약 규정을 소유권유보에 준용

## □ 우리법과의 비교

- **(유사법 비교)** 우리나라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을 2012년부터 시행 중이며, 일본과는 다르게 동산·채권 담보권과 양도담보의 어느 쪽에도 우선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

### [참고3] 동산 및 채권 담보 관련 법률비교

구분	우리나라 담보법제 (동산채권담보법 등)	일본 담보법제 (양도담보법, 동산채권양도특례법 등)
담보 목적물	·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 채권은 지명채권에 한정, 등록자동차는 제외	· 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 저당권 목적재산과 지식재산권은 제외하나, 실무상 활용되는 재산은 인정
인적 적용범위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 양도담보법은 인적 제한 없음 동산채권양도특례법상 등기는 법인에 한정
공시방법	· 동산, 채권 모두 담보등기 · 동산담보등기 존속기간: 원칙 5년	· 동산은 인도, 채권은 통지나 채무자 승낙 · 동산담보등기 존속기간: 원칙 20년
대항요건 우선순위	· 등기로 제3자 대항력 발생 · 등기와 인도의 전후로 판단	· 동산 인도와 담보등기로 판단 · 점유개정에 후순위 원칙 적용
실행방법	· 원칙 법원 경매임 다만,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 사적 실행 가능	·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사적 실행과 법원 경매 모두 가능

- **(향후 검토)** 담보법제 개선 시, 실거래를 반영한 통합된 양도담보 법제의 설계와 신속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일본과의 비교법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 금전채무의 채권자가 양도담보를 이용하는 이유는 자금 회수의 확실성과 회수 비용을 절감하는데 의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등기제도와 법원 경매를 중심으로 한 담보법제가 구축되어 있어 **자금 회수의 확실성은 높으나, 회수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 존재**

---

##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 제시 및 법령 해석 사례**

---

##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 제시 및 법령 해석 사례

### 1 관계법령에 따른 사무를 위임한 경우, 협조 요청 권한도 위임 범위에 포함 여부 [법령 해석, 26-0931, 경기도 / 회신일자: 2026. 3. 30.]

#### □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4호에서는 “보장기관”이란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장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 □ 회답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이와 같은 행정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그 명의로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권한의 주체가 수임기관인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되었다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수임기관인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급여신청이 있으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토지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이용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실시되는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은 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무라 할 것이고, 해당 조사 권한이 조례나 규칙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되었다면, 조사에 수반된 ‘협조 요청 권한’ 역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권한’의 일부로서 수임기관에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 범위가 협조 요청 권한을 제외한 조사 권한만으로 제한된다면, 실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하부행정기관이 매번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의로 협조를 요청하여 수급자격 여부 및 필요한 급여액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될 뿐 아니라 신속한 급여 결정 및 지급이 어려워 수급권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에서는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같은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자료의 목적 외 사용·제공을 금지하고 해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 여부 (법령 해석, 26-0112, 민원인 / 회신일자: 2026. 3. 30.)

### □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1호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허가·면허 등(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함)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 □ 회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 □ 이유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같은 표 각 호의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여 개별 법령에서 주된 인가등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등의 내용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제1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받아야 할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가 상승 여부를 불문하고 확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각주: 2021. 6. 29. 회신 21-0095 해석례 참조로서,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과 부과 종료 시점 사이 대상 토지의 가액 증가분에서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로구역에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그 사업 특성상 공급되는 주택 규모가 작고 정비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는 있으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과정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 VI. (생활법령정보) 이야기로 풀어보는 재판

## VI. [생활법령정보] 이야기로 풀어보는 재판

### □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녹음은 위법한 것일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모의평결일자: 2026. 3. 1.]



####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은 위법한 것일까요?

나성실 씨는 A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A주식회사의 한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주식회사가 해당 영업소를 폐점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사 직원인 김관리 씨는 나성실 씨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그 과정에서 나성실 씨의 동의 없이 나성실 씨와의 대화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녹음했습니다.

이후 나성실 씨는 이러한 녹음행위가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A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그리고 김관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중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 관련 조문: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당사자의 주장

① 김관리씨: 녹음은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했어요. 게다가 녹음행위에 대해 나성실 씨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불법행위인가요?

② 나성실씨: 저는 제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설사 녹음이 분쟁 예방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제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으로 저와의 대화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제 음성권이 침해당했다고 봐야 합니다. 회사와 김관리씨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 □ 결과

A주식회사와 김관리씨가 위 사례에서의 녹음행위로 인해 나성실 씨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 이유

위 사례에서는 회사 측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 없이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직원의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②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또는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㉓ 이 사건 녹음행위는 회사 측이 영업소 폐점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직원이 녹음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음에도 회사 측이 직원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회사 측은 근로계약 갱신 문제에 관한 직원의 반응을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었으며, 대화 내용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서 직원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또한 녹음파일 등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고 외부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으므로 이러한 녹음파일 등의 제출로 인해 직원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의 녹음행위는 나성실 씨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성실 씨를 기망·협박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녹음파일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등 근로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범위에서만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음성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분쟁 예방의 필요성과 대화 내용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녹음행위로 인해 나성실 씨가 입게 되는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